

의안번호	2206664
의 퇴 인	윤재옥 의원
회 답 일	2025. 1. 10.
추계번호	24B602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억 3,500만원(연평균 1억 4,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125	127	130	132	135	649	130
기관부담금	16	17	17	18	18	86	17
합계	141	144	147	150	153	735	147

주: 1. 대구광역시의 의견에 따라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 외에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은 인력 증원 없는 직원 재배치, 기존 사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본부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u>다만,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u>	재량규정
2	안 제13조의2(신공항 건설본부)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공항건설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둠(제1항) 본부의 본부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의 설치)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기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제1항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u>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함 <단서 신설></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항 단서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2	안 제13조의2(신공항건설본부) 신설	○	대구광역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안 제19조의2(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의 설치)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본 조항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의 일반 재정사업과 구분 운용하기 위해 현재 조례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설치하여 외부 재원을 직접 차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국가의 보조금·융자금·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1) 대구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약 11.5조원)와 종전부지 개발사업 중 첫째 사업비(약 1.7조원)를 국가로부터 조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 2년차부터는 분양 수익으로 사업 실시 및 융자금 상환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하는 것임 －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조달할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는 현재 계획 기준으로 ‘26~’31년 6년간 총 13.0조원 규모임¹⁾ [표 2]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조달 필요 사업비 (단위: 억원) <table><tr><th>사업비</th><th>계</th><th>2026</th><th>2027</th><th>2028</th><th>2029</th><th>2030</th><th>2031</th></tr><tr><td>군 공항/ 종전부지</td><td>130,203</td><td>3,077</td><td>2,724</td><td>37,295</td><td>33,485</td><td>35,782</td><td>17,840</td></tr></table> 주: 1.(산출근거) 사업 시행 주체인 대구시의 사업계획에 따름 2.상기 사업비 조달 계획은 실제 기금 예산 및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대구광역시 － 다만,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달 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채 매입을 통한 융자 또는 국고 보조 등 조달의 방식 및 조건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사업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군 공항/ 종전부지	130,203	3,077	2,724	37,295	33,485	35,782	17,840
사업비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군 공항/ 종전부지	130,203	3,077	2,724	37,295	33,485	35,782	17,84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안 제13조의2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은 본부장을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1급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을 추계

- 1급 신공항건설본부장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및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²⁾
- 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 설치(안 제13조의2)
 -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1급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외에 직원 증원, 사무공간 확보, 기본경비 확대 등의 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 － 인력 증원 없는 직원 재배치, 기존 사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신공항건설본부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
 - 본 추계에서는 1급 본부장 직위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소요를 추계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4.8.)」에 따라, 신공항건설본부장의 2025년 연봉을 1급(상당)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인 1억 2,523만원으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및 공무원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4년 10월 기준)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584

(단위: %)

[표 3] 지방공무원 1급~5급 연봉 상·하한액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25,232	83,478
2급(상당) 공무원	115,739	77,122
3급(상당) 공무원	107,598	72,279
4급(상당) 공무원	98,431	57,211
5급(상당) 공무원	87,181	38,738

주: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함

자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4.8.)」 중 발췌

- 개정안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7억 3,500만원(연평균 1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1급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건비	125	127	130	132	135	649	130
기관부담금	16	17	17	18	18	86	17
합계	141	144	147	150	153	735	147

주: 1. 대구광역시의 의견에 따라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 외에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은 인력 증원 없는 직원 재배치, 기존 사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본부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대구광역시의 의견에 따라 신공항건설본부장 직위 신설 외에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은 인력 증원 없는 직원 재배치, 기존 사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본부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